

회원 입회 및 징계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 6 조의 회원 입회승인과 제 9 조의 회원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입회 승인) 회원의 입회 승인은 이사회에서 입회원서와 정관 제 6 조의 회원 자격 기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.

제 3 조 (회원의 징계) (1) 회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발의 및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한다.

(2)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(3) 이사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(4) 징계는 경고, 일정기간의 회원 자격정지 (정기 간행물 투고 제한 포함), 제명으로 구분한다.

제 4 조 (제명 회원의 회비) 제명된 자의 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